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관련 형사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
사건번호	2026 고합 431
피고인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관련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 취지	개별 공소사실의 엄격한 심리와 증명 부족 부분의 무죄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재순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과 다른 관계자들이 한 일을 명확히 구별해 달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관계 공무원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나 연락에서 압박을 느꼈다면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강한 말 한마디나 짧은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산 처리 과정과 형사책임이 곧바로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공판기록 전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공개된 공소장 관련 보도와 피고인 측 항변에 나타난 쟁점을 바탕으로, 유리한 자료든 불리한 자료든 빠짐없이 살펴 달라는 시민의 의견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든 사실과 증거에 따른 판단을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1. 예산 부족에 따른 방침 결정과 피고인의 관여 시점을 구분해 주십시오

공소장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저 공사비를 마련할 방안을 검토했고 , 윤재순 피고인이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예산 확보에 관한 큰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회의와 연락에 참여했을 뿐 처음부터 전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예산 부족을 확인한 시점, 청사관리본부 예산 활용안이 정리된 시점, 피고인이 받은 보고, 관계기관과 연락한 시점을 시간 순서로 확정해 주십시오. 초기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독자적인 압박을 가했다면 평가해야 하지만, 후속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계획 전체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발언의 내용과 실제 강제된 행위를 정확히 특정해 주십시오

공소장 보도에는 청사관리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윤재순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과 협상하려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용 승인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강한 압박을 느꼈다면 중대한 정황입니다.

그 발언의 정확한 문구, 대화 전후의 협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직무권한, 전달받은 공무원의 원래 의무, 이후 실제 문서·승인·집행에서 발생한 변화를 대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친절하거나 강한 업무상 언사가 항상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심사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러한 결과는 엄중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3.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기획재정부 승인 경위를 살펴 주십시오

2026 년 8 월 21 일 보도에는 윤재순 피고인이 행정안전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문구는 승인 과정에 관여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지만, 문자 한 줄만으로 사전 지시의 존재나 위법한 압박의 고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전문과 송수신 시각, 앞뒤 메시지, 예산 신청·검토·승인 시점 및 관련자 진술을 함께 대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 대통령실 요청으로 판단을 변경했는지, 피고인이 그 경위를 알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국가재정법상 전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결과를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제 된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국가재정법 제 45 조·제 46 조는 목적 외 예산 사용의 금지와 전용의 승인 요건·제한을 정합니다. 관저 공사비와 행정안전부의 편성 예산 사이에 실질적인 목적 관련성이 있었는지, 관저의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전용이 국회 의결 취지를 벗어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한 전용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법 제 123 조상의 직권남용 결과가 자동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부당한 외압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판단 단계를 분리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5. 공동피고인의 다른 범죄사실을 윤재순 피고인에게 그대로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보도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김오진 피고인에게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해당 공문서의 문구와 작성 관여는 그 자체로 증거 검토 대상이지만, 윤재순 피고인이 어떤 행위로 그 작성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증명 없이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 의혹도 발언자와 결정권자, 실제 처분 경로, 피고인의 인식과 가담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이 같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별 형사책임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도록 살펴 주십시오.

6. 불리한 공소장 기재와 항변을 모두 엄중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서 언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의 반대, 대통령실의 영향력, 피고인의 강한 발언과 문자메시지를 가벼운 협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정황이 법정의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그 무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 측이 처음부터 재원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해당 시점의 회의록과 문자·전화 내역에 따라 검증되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선택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생략하는 판단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설명하는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16 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재순 피고인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구형 자체가 형사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직권의 행사와 남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법률상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고의를 면밀히 확인해 주십시오.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는 무죄를, 달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관여 단계와 발언·연락의 영향 정도에 비례하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직위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로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맞는 책임을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부께.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실무자에게 커다란 무게로 다가갈 수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기도 전에 한 줄의 문자와 몇 마디 발언에 사건 전체의 책임을 실어 보내는 일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 부디 윤재순 피고인의 발언 당시 상황과 그 뒤에 실제 발생한 일을 따로, 또 함께 살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추정하여 책임을 넓히지 마시고,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되는 책임에는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26 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선택) _____

주소 _____

연락처(선택)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